

『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(안)』

- 영 등 포 구 의 회 의 건 청 취 -

2020. 12. 7

영등포구 도시계획과

CONTENTS

Part 01

사업 개요

Part 02

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

Part 03

단계별 집행계획(안)

● 추진근거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 조제3항
 -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, 현황과 단계별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2조 제2항, 제3항
 -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·군계획시설등 중 해제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보고

● 보고 내용

- 최초 실효('20.07.) 후 현재 존치 중인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7개소에 대한 **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** 등
- ※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93개소 중 76개소는 '20. 7월 실효 전 대응(재정사업, 해제 등) 하여 미집행 해소

✓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?

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
 (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 제42조)

○ 추진경위

1999. 10. 21.	•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 시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
2000. 1. 28.	• 매수청구제도 및 자동실효제 도입 (舊 「도시계획법」)
2011. 4. 14.	•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제도 도입 (「국토계획법」)
2012. 11. 1.	•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개정 (자치구 관리시설은 구의회 보고하도록 위임)
2017. 9. 20.	•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가이드라인 배포 (서울시)
2018. 12. 27.	• 2018년 단계별집행계획 공고 (영등포구 공고 제1678호)
2019. 1.~	•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비 협의 등
2019. 9. 24.	• 「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관리방안 수립」 용역 발주
2020. 3. 30.	•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고시 가이드라인 배포 (서울시)
2020. 7. 1.	•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

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

● 시설별 현황

구분	총계	도로	공원
개 소	17	15	2
면 적(㎡)	28,077	16,721	11,356

● 지역별 현황

구분	총계	도로	공원
총 계	17	15	2
신길동	6	5	1
영등포동	11	10	1

● 결정년도별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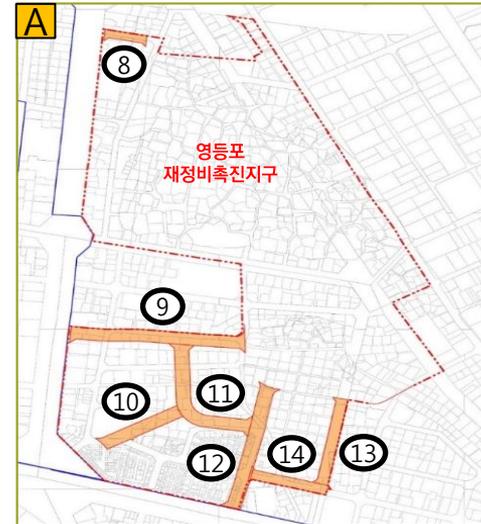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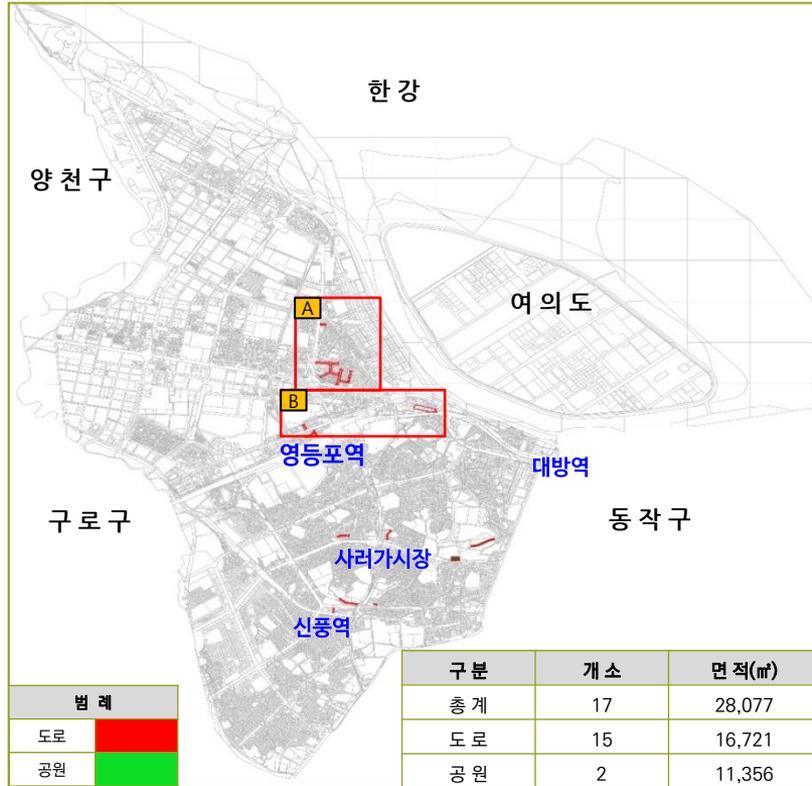
구 분		총계	도로	공원
결정년도	개 소	17	15	2
	면적(㎡)	28,077	16,721	11,356
2000년 이전	개 소	1	-	1
	면적(㎡)	4,634	-	4,634
2000년 이후	개 소	16	15	1
	면적(㎡)	23,443	16,721	6,722

● 구역별 현황

구 분		총계	도로	공원
합 계	개 소	17	15	2
	면적(㎡)	28,077	16,721	11,356
지구단위 계획구역	개 소	9	7	2
	면적(㎡)	15,141	3,785	11,356
재정비촉진 계획구역	개 소	8	8	
	면적(㎡)	12,936	12,936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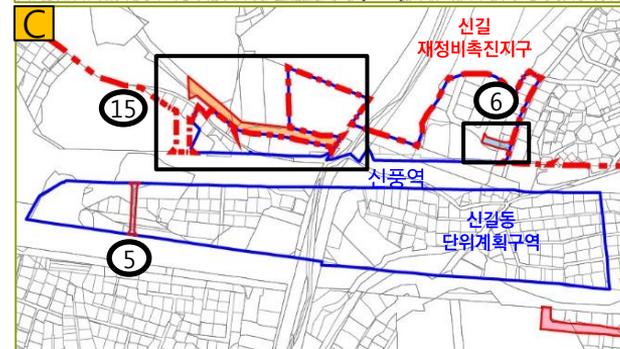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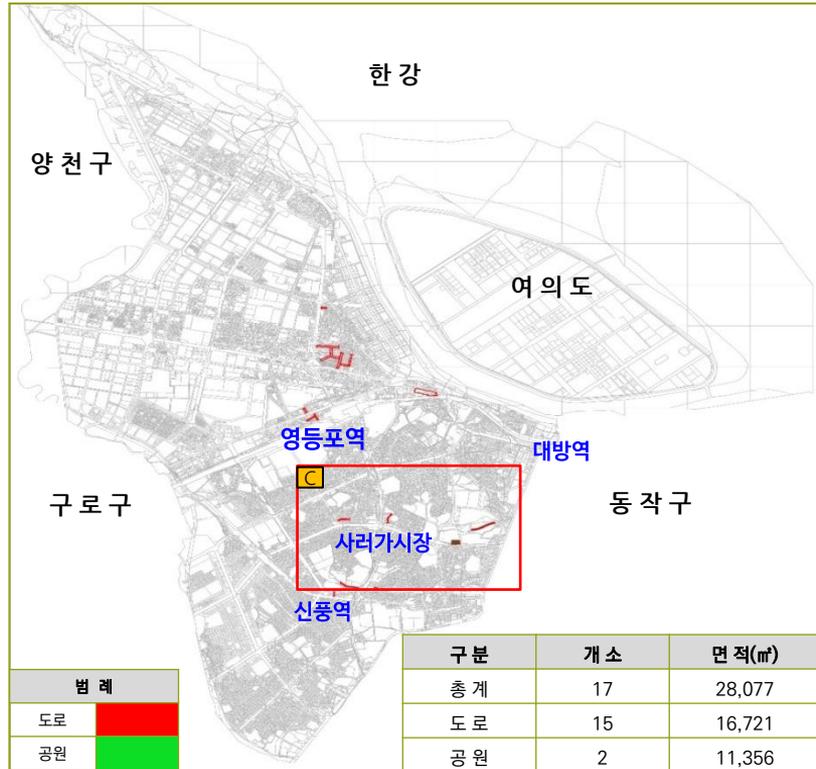
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도

부분 현황도-1



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도

부분 현황도-2



○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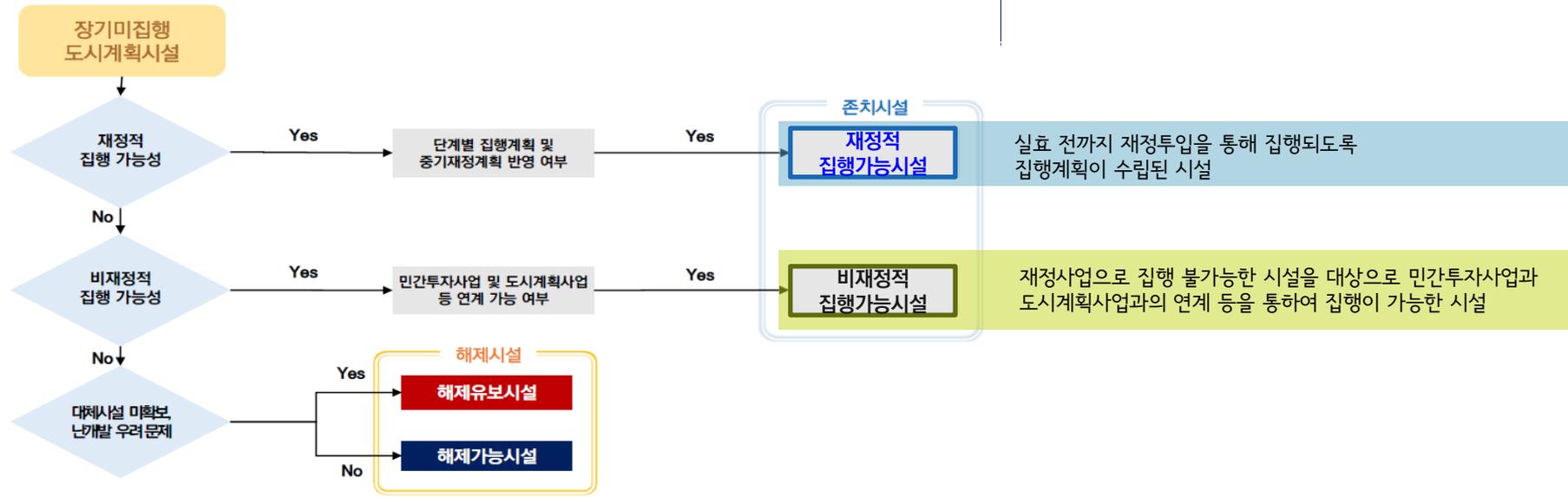
•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5조(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)

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,

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,

3년 이후에 시행하는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○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가이드라인(2017.9.)



● 단계별 집행계획(안)

• 1 단계(3년 이내) 집행계획: 0건

• 2 단계(3년 이후) 집행계획: 17건(도로 15, 공원 2)

※ 지구단위계획구역(9개소), 재정비촉진구역(8개소) 내 시설로 향후 비재정사업으로 추진 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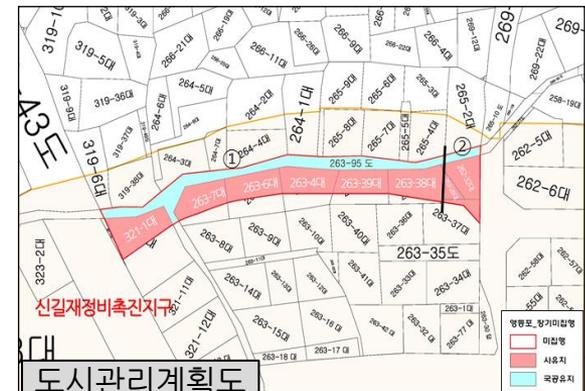
● 단계별 집행계획(안) 목록(2단계)

연번	분류	종류 세분	위치	폭원(m)	연장(m)	면적(㎡)	결정고시일	비고
1	도로	소로2류	신길동 263-37~321-1	8	103	883	2006-02-16	신길 지구단위
2	도로	중로2류	영등포동4가 419-14~419-11	15	50	767	2002-06-22	부도심 지구단위
3	도로	소로2류	영등포동 3-119~423-57	8	80	639	2002-06-22	
4	도로	소로2류	영등포동 1-38~432-39	8	60	520	2002-06-22	
5	도로	소로3류	신길동 430-22~427-17	4	49	196	2002-06-18	
6	도로	소로3류	신길동 2862~3574-15	6	29	175	2002-06-18	신길 지구단위
7	도로	소로3류	신길동 4902-16~4092-5	6	101	605	2006-02-16	영등포 재정비촉진
8	도로	소로1류	영등포동7가 76~75-3	10	45	450	2005-12-22	
9	도로	중로2류	영등포동5가 40-4~105-1	15	182	2,730	2005-12-22	
10	도로	중로2류	영등포동5가 41-21 ~ 20-62	15	89	1,337	2005-12-22	
11	도로	중로2류	영등포동5가 111~ 영등포동 2가 41-2	15	157	2362	2005-12-22	
12	도로	중로2류	영등포동5가 33-134 ~ 18-8	15	159	2,392	2005-12-22	
13	도로	중로3류	영등포동5가 33-29 ~ 6-1	12	111	1,329	2005-12-22	
14	도로	중로3류	영등포동5가 13-1 ~ 13-1	12	83	996	2005-12-22	
15	도로	소로2류	신길동 424-3 ~ 340-1	8	155	1,340	2007-11-29	신길재정비촉진
16	공원	공원	영등포동1가 11-25 일대			6,722	2002-06-27	부도심 지구단위
17	공원	공원	신길동 4934-4 일대			4,634	1940-03-12	메낙골 지구단위(일부)

● No.1 : 도로 (신길동 263-37~321-1)

시설 세분	규모		최초 결정일	단계별 집행계획
	폭원(m)	연장(m)		
소로2류	8	103	서고56 (2006.02.16.)	2단계

- 전체구간 100%가 신길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포함(국공유지 29%, 사유지 71%)
- 현황도로는 남측의 건축물로 인해 폭원 확보 안됨
- 도로양쪽 건축물은 본 도로를 차량출입용도로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
- 신길 지단 재정비 중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검토



● No.2 : 도로 (영등포동4가 419-14~419-11)

시설 세분	규모		최초 결정일	단계별 집행계획
	폭원(m)	연장(m)		
중로2류	15	50	서고251 (2006.06.22)	2단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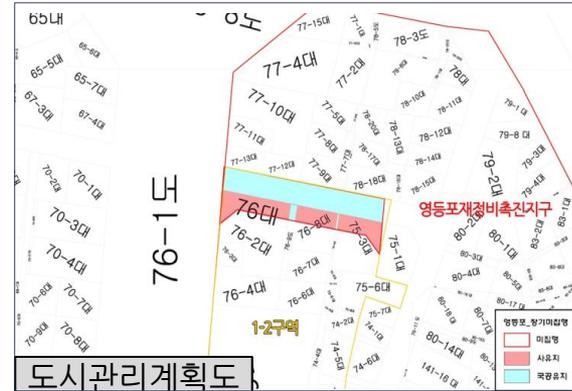
- 영등포 부도심 지구단위계획의 특별계획구역 내(국공유지 20%, 사유지 80%)
- 현재 전구간 미개설된 상태, 현재 부도심지단재정비 운영 중
-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 내 포함되어 폐지 예정



● No.8 : 도로 (영등포동7가 76~75-3)

시설 세분	규모		최초 결정일	단계별 집행계획
	폭원(m)	연장(m)		
소로1류	10	45	서고411 (2005.12.22)	2단계

-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1-2구역 내(국공유지 59%, 사유지 41%)
- 남측부로 건축물 및 사유지 저축되어 폭원 5m 미개설
- 영등포1-2구역 촉진사업 추진 시 확보('19.12.02. 교통영향평가)



● No.17 : 공 원 (신길동 4934-4일대)

시설 세분	규모	최초 결정일	단계별 집행계획
	면적(m ²)		
공원	4,634	총고 208 (1940.3.12)	2단계

- 일부 공원조성 됐으나 병무청 및 해군부대 점유 중
- 2 필지 존치(국토교통부 공고 제707호(20.5.29.)), 나머지 실효 (영등포구 고시 제130호, '20.07.02.)
- 실효 대비 공원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서고시 제251호, '20.06.25)
-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진행 중



감 사 합 니 다.